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63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27.

다. 회 부 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 설>	○ 별표 2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기금명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 ◦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한 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 리	기획재정부장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라 함)은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산업화 등을 통한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단기간 내 비약적인 성장의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적 갈등·양극화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위기 등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2023년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25년을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혁신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따른 정의 조항 >

구분		주요 내용
정의	사회연대경제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안 제3조제1호)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어업법인단체·농협·수협·산림조합·업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기업 등(안 제3조제2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안 제3조제3호)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안 제18조) ○그 밖에 이 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

우리나라도 사회연대경제의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으나,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이 조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재원-사업간 연계성이 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회연대경제 관련 시장·산업 변화가 급격하지 않아 신속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일반회계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분야를 지원²⁾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2)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성장지원, 인식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³⁾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 중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등’으로, 기금의 용도 사업인 사회연대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이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등과의 연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정부의

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등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그 운용상 독립성 및 안정성 저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도 일반회계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금을 신설하더라도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함에 따라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지원과 사업추진방식에서의 차별화를 두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사회연대경제 관련 분야 지원 현황 >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행정안전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 시작연도	2007년	2012년	2010년	2012년
주요 참여자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수 (2024년 말 기준)	3,762개소	26,520개	1,800개(‘23년)*	962개
중간 지원기관	해당없음(‘24년부터 폐지)		권역별 마을기업지원센터 17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16개 지역자활센터 250개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내용	· (경영) 성장지원센터 운영, 판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컨설팅 · (세제) 법인·소득·지방세 감면 등	· (경영) 설립·운영 자문 및 정보제공, 교육·홍보, 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등	· (재정) 사업비 · (경영) 컨설팅, 교육·홍보	· (재정) 한시적 인건비 ·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홍보
2025년 예산	284억원	16억원	17억원	수급자수 기준 자활근로 인건비 지자체 보조 (자활기업 인건비 별도 편성 X)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계류 현황>

구분 (의안번호)	황명선의원안 (제1643호, 2024.7.11.)	용혜인의원안 (제5197호, 2024.11.4.)	윤호중의원안 (제8563호, 2025.2.27.)
기금명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기금 규정 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기금 자원	◦ 정부의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국가의 출연금 ◦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정부의 출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 ◦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 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 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 ◦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한 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사회연대경제기본법」</u>

문의처
02)6788-5152